

◇ 공통사항

-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후, 경감자격 미대상 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.
-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이 안 되는 경우, 신청년월일로부터 매년마다 자격증명서류를 갱신해야 하며, 갱신하지 않을 경우 경감이 중지됨에 동의합니다.
- 제7조(경감지원 대상자의 의무)에 따라 자격변동·이사·사망 또는 에너지원의 변경,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여부 등 경감에 적용했던 변동사실은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.
 - 외국인 :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
 - 자격요건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: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한도를 적용하게 되며, 경감을 적용했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경감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.
 - 경감대상자의 자격 변동사실 통보 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,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잘못 경감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.
 -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신청서 등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.
- ※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지역 도시가스사에 고객번호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◇ 구비서류

※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.

제출 여부	구 분	구 비 서 류
제출생략 가능서류	공통서류	- 주민등록등본
	장애인,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유공자, 차상위계층 등	- 장애할인(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) 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) - 국가유공자(5.18)할인(국가유공자증) 1-3급 -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(독립유공자증, 수급자증) - 차상위계층 요금할인(차상위계층확인서)
제출필요 서류	다자녀가구	-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“자(子)” 또는 “손(孫)”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“가족관계증명원” - 위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2 서식 “가정위탁보호 확인서”
	장애 외국인	-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(사실증명) 또는 국내거소신고증(사실증명)